

유럽의 포장폐기물관계 규격안 초역

Abrdged Ttranslations of the CEN Report on Packaging waste in Europe

社團法人 日本包裝技術協會 ISO/ TC 122 國內對策委員會

VII. prEN 261-241(포장-재사용)

서문

1994년 12월 20일의 '포장과 포장폐기물지령 94/62/EC'의 목적은 포장과 포장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국가 시책을 정합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의 모든 가맹국만이 아니라 제3제국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막고, 또는 그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 그것에 의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실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공동체내의 시장기능을 보증해 무역장벽이나 공동체내의 경쟁으로 인한 나쁜 여파나 규제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때문에 본 지령에서는 우선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다음으로 포장의 재사용, 리사이클, 포장폐기물 그 밖의 회수방법을 기본방침으로서 부가해 폐기물의 최종 처분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책을 규정한다.

포장의 목적은 제품의 수납, 보호, 유통, 생산

의 촉진이다. 그 주요한 역할의 하나는 제품 로스의 방지이다. 포장의 재사용은 최종 처치로서 포장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이다.

포장의 발생방지, 리사이클, 회수 등의 영향을 특히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중금속의 사용을 줄이는 것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지령 94/62/EC'는 포장이 준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본 규격(안)은 이들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의 하나를 취급하는 것이다.

관련규격 prEN 261-265(포장-재사용)는 어떤 포장이 지령의 요구대로, 시장에 나오는 포장에 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본 규격(안)과 다른 4개의 규격(안) 및 하나의 CEN리포트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의 짜임새를 나타내고 있다.

1. 적용범위

본 유럽규격원안은 재사용을 목적으로 한 모

든 포장타입 및 필요한 경우는 관련되는 시스템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의 평가기준을 상세하게 서술한 것이다.

본 유럽규격원안과 그 외의 4개의 포장에 관한 규격(지령) 원안, 하나의 CEN리포트(지령) 원안의 기본적 관계는 prEN(261-265)에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2. 규정인용규격

본 유럽규격원안은 날짜의 있고 없음의 인용에 따라 다른 규격으로부터의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이것들의 인용규격은 원문 중 적절한 곳에 인용되고 있지만, 그것들의 규격을 다음에 나타냈다.

날짜가 있는 규격에 관해서는 이것들 규격의 그 후 개정 또는 수정은, 수정 또는 개정에 의해 유럽규격에 넣었을 때에만 본 유럽규격에 적용된다.

날짜가 없는 규격은 그 규격의 최신판을 적용한다.

prEN 13193(포장 - 포장과 환경 - 용어)

prEN 261-265(포장과 환경 - 포장과 포장폐기물의 분야에 있어서의 유럽규격의 사용에 관해서의 요구사항)

3. 용어와 정의

본 유럽 규격원안의 목적에 대해서는 prEN 13193 및 prEN 261-265에 정하는 정의 외에

이하의 정의를 적용한다.

3-1. 재사용

그 라이프사이클 중에서 최소수의 行程 및 순환을 성취하기 위해 계획, 설계된 포장이 시장에 존재하는 보조제품의 도움을 빌거나 또는 빌리지 않고 포장으로의 재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처음부터 계획된 같은 목적으로 재사용 또는 재충전되는 작업. 이러한 재사용 포장은 재사용이 바람직하지 않을 때에는 포장폐기물이 된다.

3-2. 재사용 가능 포장

그 라이프사이클 중에서 재사용시스템에 있어서의 최소수의 行程 및 순환을 성취하도록 계획, 설계된 포장.

3-3. 行程

충전/적재에서, 비움/하역에 이르는 포장의 흐름

3-4. 순환

재사용 포장이 거치는 충전/적재에서, 충전/적재로의 사이클

3-5.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

당초의 목적을 이미 다한 포장이며, 재사용 시스템에 의해 당초의 목적으로 다시 사용되는 포장.

주) 같은 목적으로 재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제2의 목적으로 재사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포장의 사용목적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케이스에서는 이 규격의 목적으로 하는 재사용포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래는 유제품을 쌓기 위해 받침대로, 지금은 가정용 벽돌을 쌓기 위해 재사용되고 있는 받침대는 같은 목적으로의 재사용이다.

마스타드가 담겨 있던 병을 비워서, 음료용 글라스로서 재사용할 경우는 같은 목적으로의 재사용이 아니다.

잼이 담겨져 있던 병을 비워 건조 완두콩을 가정에서 다시 넣어 재사용할 경우는 같은 목적으로의 재사용이 아니다.

3-6. 재사용을 위한 시스템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조직상, 기술상, 재정상의) 기구

주) 본 규격의 적용 범위 내에서는 다음의 것이 현재 '시스템'으로서 승인되고 있다.

폐쇄순환시스템, 개방순환시스템, 혼성시스템

3-7. 폐쇄순환시스템

재사용 가능한 포장이 어느 하나의 기업 또는 기업의 어느 하나의 조직 그룹에 의해 순환되는 시스템.

3-8. 개방순환시스템

재사용 가능한 포장이 불특정 기업간에서 순환하는 시스템.

3-9. 혼성시스템

이하의 2가지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

- 상업적 재충전으로 이끄는 재유통시스템의 존재가 아니고, 최종 유저에게 남는 재사용 가능한 포장.

- 재사용 가능한 포장에 내용물을 옮기기 위해 보조제품으로서 사용되는 1회 사용을 위한 포장.

3-10. 보조제품

재사용 가능한 포장의 재충전/재적재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 보조제품은 1회 사용(원웨이)을 위한 제품이며, 본 규격의 대상은 아니다.

- 보조제품의 일례로서는 가정에서 용기에 리필하는데 사용되는 세제용 소분투가 있다.

- 라벨이나 클로쥬어(closure) 등, 그 기능상 재사용 가능포장을 보조하는 재사용 가능포장이 아닌 품목은 포장의 일부로 본다.

3-11. 제조정

재사용 가능포장을, 기능을 가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작업.

4. 방법

포장이 본래 계획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운데 '재사용 가능'이라는 주장이 적절한지 어떤지를 평가하기 위해, 제조업자는 다음을 보증할 필요가 있다.

(1) 포장의 재사용성이 포장/충전자의 계획 목표인 것.

(2) 적절한 제조정이 가능한 포장인 것.

(3) 재충전/재적재가 가능한 포장인 것.

(4) 재사용을 보조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시스템이 공급자가 포장제품을 책임을 가지고 출하는 시장에서 기능하고 있는 것.

재사용 가능한 포장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은 포장 자체로서의 요구사항과 그것이 기능하는 재사용시스템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재사용 가능” 포장의 상세한 요구사항이 그 적용에 의해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설계 프로세스는 당해 포장의 재사용(시스템)에 있어서의 운용상의 경험에 대응해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설계프로세스가 충분히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문서에 의한 뒷받침, 특히 평가프로세스의 결과기록도 필요하다. 본 유럽규격에서는 수많은 특정 문제의 대응을 기록한다는 정식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사용프로세스, 예를 들면 포장을 재순질 또는 청정하게 하는 프로세스로 고용되는 인원의 건강 및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해서는 유럽연합의 전 가맹국에서는 기존의 법률에 의해 특정 또는 포괄적인 요구사항이 정해져 있으며, 포장에 관해서만 독자의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요구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법률로 정하는 요구사항과의 사이에 모순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것이다.

5. 요구사항

5-1. 포장/충전을 하는 자는 시장에 내는 포장 제품 각각에 관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빠른 단계에서 이하의 것을 입증 및 기록할 필요가 있다.

-재사용될 것이라는 개개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포장의 재사용 가능성에 관한 의도

-중대한 손상을 주지 않고 포장을 해체/하역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보수가 가능할 것

-목적으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성능을 현저히 줄이지 않고, 지정하는 방법 및 규격의 여하에 관계하지 않고, 당해 방법에 의해 또 당해 규격에 대해 포장을 재조정(청결, 세정, 보수) 가능할 것

-제품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 없이, 포장으로의 재충전/재적재가 가능할 것

-포장된 제품을 시장에 낼 책임을 공급자가 지는 시장으로, 일련의 기구(조직상, 기술상, 또는 재정상의)가 기능하고 있으며, 그것에 의해 재사용이 가능할 것

5-2. 임의의 특정 포장으로의 본 규격의 적용에 관해서는 prEN XXXX에 규정대로 행한다.

6. 적절한 재사용시스템

6-1. 시스템의 종류

본 규격의 조항에서는 다음의 3종류 시스템을 나타낸다.

공급자는 목적으로 하는 사용에 관한 특정 상황을 고려함과 동시에 임의의 특정 포장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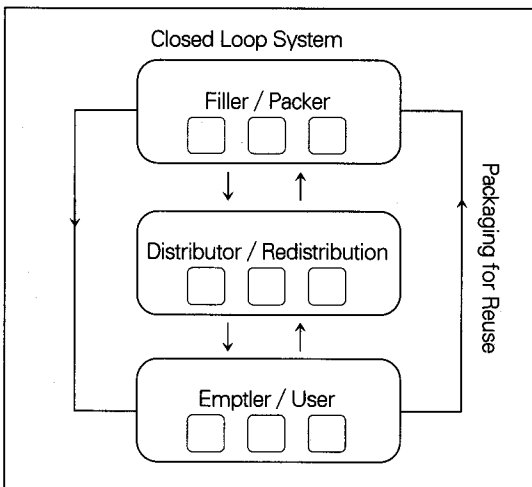
최적의 시스템을 확인할 수가 있다.

6-1-1. 폐쇄순환시스템 (그림 1)

폐쇄순환시스템은 적절하고, 하기에 게재하는 특성을 만족하고 있는가?

- 1) 재사용 가능포장이 어느 하나의 기업 또는 기업의 어느 하나의 조직그룹에 의해 소유된다.
- 2) 포장이 어느 하나의 기업 또는 기업의 어느 하나의 조직그룹에 의해 순환된다.
- 3) 포장의 설계가 합의된 규격에 준거해 결정되고 있다.
- 4) 포장이 합의된 규격에 준거해 사용된다.
- 5) 수집 및 재유통시스템이 적절하다.
- 6) 기업 또는 기업그룹이 재사용의 의무를 진다.
- 7) 합의된 규격에 준거해 사용되고 있던 경우에는 포장이 되돌아온다.
- 8) 충전/포장/소매를 하는 자가 재사용의 목적을 위해 어떻게 포장을 취급하는지, 포장을 어

(그림 1) 폐쇄순환시스템



디에서 손 뉘지에 관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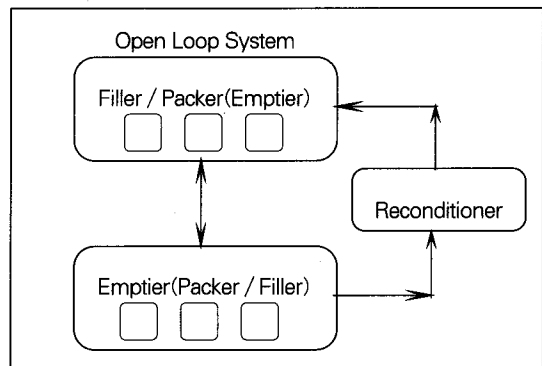
- 9) 규격에 기초하는 관리시스템이 적절하다.

6-1-2. 개방순환시스템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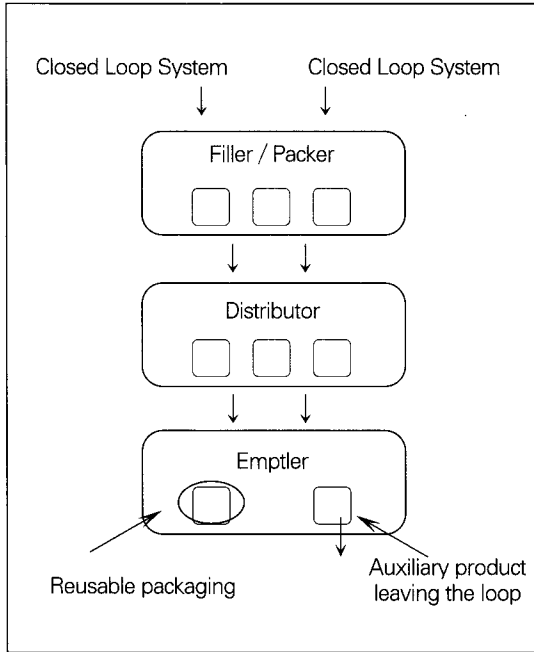
개방순환시스템은 적절하고, 하기에 게재하는 특성을 만족하고 있는가?

- 1) 재사용 가능포장이 포장을 비우는 자/사용자 혹은 포장을 재사용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제3자에 의해 사용된다.
 - 2) 재사용 가능포장이 사용시에 각 사용자에게 의해 소유되고 있다.
 - 3) 포장의 설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규격에 준거해 결정되고 있다.
 - 4) 필요한 경우 포장을 재사용에 적합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포장을 비우는 자/사용자가 인수할 수 있으며, 그러한 프로세스가 시장에서 이용될 수 있다.
 - 5)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규격에 기초해 관리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 주) 수집 및 재유통시스템이 적절한 또는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림 2) 개방순환시스템



(그림 3) 혼성시스템



6-1-3. 혼성시스템 (그림 3)

혼성시스템은 적절하고, 재사용 가능포장은 하기에 게재하는 특성을 만족하고 있는가?

- 1) 최종 사용자의 본래 목적에 머물고, 보조 제품의 도움을 빌어 재충전되는 재사용 가능 포장.
- 2) 재사용 가능포장이 포장을 비우는 자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 3) 포장을 비우는 자가 포장에 충전하는 자이다.
- 4) 재사용 가능포장이 보조제품이 언제라도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시장에 내지 않으면 안 된다.
- 5) 충전/포장/소매를 하는 자는, 재사용 가능 포장의 재충전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VIII. prEN 261-265(포장 및 환경-포장 및 포장폐기물 분야의 유럽규격 사용에 관한 요구사항)

서문

포장은 상당한 범위의 기능적, 법적 요구에 적합한 것이 요구된다. 본 규격은 포장과 포장폐기물지령(94/62/EC) 요구사항으로의 준거에 관한 것이다. 이 지령의 전문에서는 경합의 변형이나 무역장벽을 피해, 환경에 대한 포장과 포장폐기물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 포장의 구성물 및 리사이클성을 포함한 재사용성, 회수성의 기준이 되는 기본적 요구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서술되어 있다.

지령의 제9조, 제11조 및 부속서 II에 정해져 있는 기본적 요구사항은 포장의 사용 후 환경에 대한 영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5개의 규격(지령) 및 한 개의 CEN리포트(지령)는, 이 기본적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따라서 이 특성의 측면에 맞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령의 기본적 요구사항은 포장이 그 사용 후에 주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본적 요구사항으로의 적합은 공급자에 관련되며, 최대 7개의 독립된, 단 관련되는 유럽리포트 또는 규격에 있어서 공급자가 시장에 포장 및 포장제품을 내기 전의 상세한 검토에 관해 정해진다.

이들 리포트 또는 규격 내의 2가지에 있어서는 4가지의 “중금속”을 비롯한 유독 및 유해물질의 함유 및 농도에 관해 정해진다. 다른 5가지에 관해서는 발생원 삭감, 재사용 및 회수의 개

념을 취급한다. 이들은 각각 폐기물로서 처리되는 포장의 영향을 저감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동시에 동일한 포장단위에 적용할 수는 없다.

본 규격의 제5절에 게재하는 이들의 표준화된 순서는 그 조합과 상황에 의해서는 서로 모순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때문에 이들 프로세스 내의 어떤 적용에 관해서 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다른 프로세스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된다.

이들 순서 중 5가지에 관해서는 전용 규격이 작성되고, 또 중급속의 평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 CEN리포트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본 규격을 도입해 이들 평가간의 관계를 정해, 유독 및 그 외의 유해물질 평가순서를 채택해 넣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본 규격의 목적은 일련의 시책을 위한 포괄적 방법론을 확립해, 유럽시장에 포장 혹은 포장제품을 내놓는데 책임을 지는 자가 지령의 기본적 요구사항에 따르고 있다는 근거의 바탕에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본 규격에서 정하는 순서 및 기록의 유지는 EN ISO 9000시리즈에서 정하도록 정식 품질 관리시스템 혹은 EN ISO 14000시리즈로 정하도록 환경관리시스템의 일부로서 적용하는 것이 장려된다.

1. 적용범위

본 유럽규격은 시장에 포장 또는 포장제품을 내놓는데 책임을 지는 자 혹은 조직(공급자)이 5가지의 포장에 관한 규격(지령) 및 1가지의 CEN리포트(지령)를 조합시켜 적용할 경우의 요구사항과 순서를 정하고 있다. 본 규격에서는

유독 및 그 외의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순서를 채택해 넣고, 적합함을 증명하기 위한 순서에 관해 서술한다.

2. 규정 인용규격

본 유럽규격은 날짜가 있고 없음의 인용에 의해 다른 규격으로부터의 규정을 집어넣고 있다. 이들 규정 인용규격은 원문의 적절한 개소에서 인용되고 있지만, 하기에 그 규격을 나타냈다. 날짜가 붙어 있는 규격에 관해서는 이들 규격의 그 후의 개정 혹은 수정은 개정 또는 수정에 의해 이 유럽규격에 집어넣었을 때에만, 본 유럽규격에 적용한다. 날짜가 없는 규격에 관해서는 그 규격의 최신판을 적용한다.

2-1. prEN 13193 포장

- 포장과 환경
- 용어

2-2. prEN(261 077) 포장

- 재료리사이클로 회수 가능한 포장의 요구사항

2-3. prEN(261 236) 포장

- 콤포스트화 및 생분해에 의해 회수할 수 있는 포장에 관해서의 요구사항 (포장의 최종 승낙을 위한 시험방법과 평가기준)

2-4. prEN(261 237) 포장

- 正味발열량의 최저 사양을 포함, 에너지회수의 형태로 회수할 수 있는 포장에 대한 요구사항

2-5. prEN(261 238) 포장

- 발생원 삭감에 의한 감량화

2-6. prEN(261 241) 포장

- 재사용

2-7. prCR(261 266) 포장

- 포장에 함유되어, 환경으로 방출되는 중금속 및 그 외의 위험물질 측정과 검증을 위한 요구사항
- 제1부 포장에 함유되는 4가지의 중금속 측정과 검증을 위한 요구사항

2-8. prCR(261 267) 포장

- 포장에 함유되어, 환경으로 방출되는 중금속 및 그 외의 위험물질의 측정과 검증을 위한 요구사항
- 제2부 포장에 함유되는 위험물질 측정과 검증을 위한 요구사항

2-9. prCR(261 268) 포장

- 재료의 리사이클
- 리사이클에 대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물질, 재료의 요구사항 기록

3. 정의

본 규격의 목적에 대해서는 prEN 13193에 정해져 있는 것에 더해져 이하의 용어 정의를 적용한다.

3-1. 공급자

시장에 내는 포장 및 포장제품의 책임을 져야

할 실체이다.

주) 통상 이용되는 “공급자”라는 용어는 공급의 고리 중에서 여러 가지 시점에서 사용된다.

본 규격의 목적으로서는 공급의 고리 중에서 포장 및 포장제품에 관련한 취급이 생기는 모든 시점에서 이용된다.

3-2. 포장의 구성비

손 또는 간단한 물리적 수단으로 분리할 수 있는 포장의 구성성분.

4. 원리와 방법

4-1. 일반적 접근

포장과 포장폐기물지령에서 정해지는 기본적인 요구사항 및 평가기준을 정하는 규격, 혹은 리포트와 사이의 관계는 부속서A, 특히 표A.1의 No.3란의 참조번호는 규격과 리포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 1] 안의 번호를 나타내고 있다.

[표 1]에서 식별되는 중금속에 관한 리포트와 각 규격은 공급자가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특정의 순서에 관한 요구사항으로의 적합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작성된 것이다.

[표 1] 5가지의 포장규격, 1가지의 CEN리포트 및 부속서 D의 관계제조 및 조성 재사용 회수

1-발생원 삭감에 의한 감량화(prEN 261 238)	3. (prEN 261 241)	4.1 재료(prEN 261 077)
2a 및 b-중금속을 비롯한 유독 및 그 외의 유해물질(prCR 261 240 및 부속서D)		4.2 에너지(prEN 261 237)
		4.3 유기물(prEN 261 236)

참고용 부속서는 요구사항의 본질을 상세히 서술함과 동시에 평가의 방법론에 관한 수인을 나타냈다. 공급자는 포장제품의 안전, 위생, 고객으로부터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해 포장의 기능적 요구사항이란 설계상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특정의 포장을 위한 적절한 평가순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선택시에는 포장이 재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식별하면 마찬가지로 다른 규격의 요구사항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고려해 1가지 순서의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 순서의 적용을 맞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두드러진 것도 있다. 서로 독립된 별도의 규격을 선택해 적용할 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임의의 특정 적용에 관해서 그들 규격간의 최적 밸런스를 결정하는 것일 것이다. 사업의 환경면에서의 달성능력을 개선함과 동시에 시장에 포장을 내는 기능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가는 기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 공급자에게는 이들의 방침을 정식의 관리시스템 일부로서 적용할 것을 추천한다.

4-2 중금속 및 유해, 유해물질에 대한 특별 접근지

포장의 소각 혹은 매립 후의 함유중금속에 의한 환경에의 영향평가는 CEN리포트 prCR (261 240) 안에서 다루지고 있다.

유독물질 및 다른 유해물질은 많은 유럽지령 중에서 정의되고 있다. 소각, 매립의 폐기물관리 작업에 의해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물질, 재, 침출액 중에 포함되는 그 유독, 유해물질에 관해서도 법률로 정해져 있다.

4-3. 적용분야

본 규격 중에서 검토되고 있는 포장의 최소 부분은 구성성분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구성성분이 한데 모여 포장의 기능상 단위를 형성, 그것들이 모여 완전한 포장계가 되고, 제1, 제2, 제3 포장을 구성한다. [표 2]는 전체의 시스템 중에서의 각종 평가법의 적용에 관해 그 해당분야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평가방법의 적용분야

구성성분	레벨에서의 포장 최소 기능단위
재료회수	레벨에서의 포장
에너지회수	임의의 완전한 포장계유독 및 유해물질의 방지
유기적회수	재사용 발생원 식감에 의한 감량화

5. 요구사항

5-1. 적절한 평가순서의 검토와 선정

공급자는 시장에 내는데 책임을 갖는 포장 및 포장된 상품에 관해 또 그 목적으로 하는 용도에 관해 표1에 게재된 규격 각각의 적용성이 확실히 평가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과 동시에 공급자는 prCR(261 266)의 7.2절에서 추천하는 수단, 혹은 부속서D에 정해진 유독 및 그 밖의 유해물질에 관한 순서를 이용해 중금속 수준을 제한하든지, 적당하면 더욱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충분한 고려가 되는 것을 보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급자는 시장에 내는 포장 혹은 포장제품에 대해 기능성, 안전성, 소비자로부터의 요구성을 확실히 유지하면서, 포장폐기물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감소한다는 목적에 관해 [표 2], [표 3]에

따라서 규격의 조합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5-2. 선택한 평가순서의 적용

공급자는 이하의 사항을 보증하기 위해, 시장에 내는 포장에 대해 선택한 규격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표 3] 참조

-포장시스템이 prEN (261 238)에 기초해 동일한 요구사항에 관해 최저 필요 한도량의 재료를 이용하고 있다

-포장 구성물의 중금속 함유량은 CEN리포트 prCR (261 266)에서 추천 장려되고 있는 것처럼 최대 허용레벨 미만이며, 기능상의 목적에서 중금속이 사용되는 경우도 최저량이다

-포장의 구성물이 부속서D에 따라서 평가되고 있다 ; 포장의 최소 기능단위가 prEN (261 241)에 따라서 재사용 가능하다

-포장의 최소 기능단위가 prEN (261 077)에 따라서 리사이클에 의해 회수 가능하다

-포장의 최소 기능단위가 prEN (261 237)에 따라서 에너지회수 가능하다

-포장의 최소 기능단위가 prEN (261 236)에 따라서 콤포스트화 가능하다.

5-3. 평가데이터의 문서

평가기록은 5-1, 5-2의 요구사항에 응해 보증하는 관계문서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포장 혹은 포장제품이 나온 후, 적어도 2년 사이에 공급자에 의해 작성되고, 보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록은 요구될 경우, 심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순서

6-1. 목적

폐기물로서 처리되는 포장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율적, 효과적인 전체적 순서를 달성하기 위해 정선된 평가순서를 적용하는 것.

재료의 전환, 즉 적용요구사항의 전환에 의해 폐기물삭감에 관한 이들 순서의 몇 가지는 서로 모순된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본 순서를 준수하는 것으로 공급자는 [표 3]에 나타난 적절한 삭감순서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다.

6-2. 적용

기존의 설계나 새로운 설계의 어떤 포장에서도 관계가 있는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표 2], [표 3]을 참조해 결정된 적절한 평가를 실행한다.

6-3. 결과의 재평가

평가를 요약의 형태로 작성, 모든 평가의 결과를 기록한다(적절한 서식의 예는 부속서B를 참조). ko

[표 3] 포장의 감량화/폐기물 전환방법의 적용가능성

평가 참조번호	평가	적용가능성
1	발생원 삭감에 의한 감량화 (prEN 261 238)	모두에 가능
2a	중금속(prCR 261 266)	모두에 가능
2b	다른 유해물질 (부속서 D)(4.2절 참조)	모두에 가능
3	재사용(prEN 261 241)	요구될 경우에 가능
4	회수	적어도 1가지를 모두에 적용 가능
	4.1 재료회수(prEN 261 077)	
	4.2 에너지 회수 (prEN 261 237)	
	4.3 유기적 회수 (prEN 261 236)	